



약국 및 의약품판매업 폐업·휴업·재개 신고 안내

민원사무명	약국·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·휴업·업무재개 신청
사무내용	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을 폐업 또는 휴업·업무재개 신고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 하는 민원
수수료	없음
처리기한	7일
구비서류	※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☞ 민원인 제출서류 1. 신청서 2.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
처리절차	접수 → 검토(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) → 결재 → 결과 통보
협의기관 및 협의사항	협의사항 없음
관련법·제도	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, 제24조제1항, 제41조 제1항
서식	파일다운받기 ☞